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처분에 대한 재송수단 안내 의무 신설 〉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6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처분에 대한 쟁송수단 안내 의무 신설	3

I. 개요

1.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0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5. 26.
- (3) 회 부 일 : 2026. 5.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1항은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

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제4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그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대상자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이 충실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처분에 대한 쟁송수단 안내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등의 결정을 하고 이를 신청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u>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 ② (생략) <u><신설></u>	<u>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8조¹⁾에 따르면, 수급자 및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²⁾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³⁾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시·도지사에게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 시·도지사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또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⁴⁾

-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⁵⁾

< 이의신청 등 절차 요약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이처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가구 구성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급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법령 적용에 대한 판단 차이로 인해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수급권자 등이 적절한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결과와 함께 이후 이용 가능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후속 쟁송수단⁶⁾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 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수급자 또는 급여 신청자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 및 그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고, 특히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단순한 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넘어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⁷⁾은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6)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지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그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제도에서도 지침 등을 통해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후속 쟁송수단과 제기기간 등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업무에서도 이러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및 쟁송수단 안내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행정기본법」상 이미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규정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개별법에 별도 규정을 둘 실익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시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있어, 개별법에 같은 내용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에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제처)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향후 「행정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개별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내용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그 때마다 매번 추가로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이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기존 입법례⁸⁾와 같이 「행정기본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연결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 이미 「행정기본법」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를 통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 불필요함.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1】 이의신청 결정 통지 관련 내용 - 통지서(사업안내 p429)

[서식 11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처분 취소·변경 [] 기각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성명)

문의전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도지사

직인

참고 사항	• 기각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각하 :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	---

【참고2】 이의신청 결정 통지 관련 내용 - 공문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1. 귀하께서 광역시장을 통해 우리부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1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송부합니다.
2. 또한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광역시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이의신청결정서 1부.

2.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안내사항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